

주주각위

##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

삼가 주주님의 건승과 다행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 365조 및 정관 제20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일시 : 2020년 08월 21일 (금요일) 오전 11시 00분
2. 장소 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16 평촌디지털엠피어 411호 (본사 대회의실)
3. 회의 목적사항
  - 나. 부의안건
    - 제1호의안 : 이사선임의 건
    - 제2호의안 : 감사선임의 건
    - 제3호의안 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.
    - 제4호의안 : 정관 일부 조항 세분화 등.
4.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
  - 직접 행사 : 주주총회 참석장, 신분증
  - 대리 행사 : 주주총회 참석장,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
5.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
당사 정관 제29조에 의거하여 주주님께서서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대리인이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때에는 표결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08월 06일

주식회사 세니젠 대표이사 박정용



붙임 1 : 주주총회 참석장

[별첨 1]

■ 이사선임의 건

성명	출생년월	임기	신규선임여부	비고	주요경력(현직포함)
임승택	1957년06월10일	2년	신규선임	사외이사	1983년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석사 1990년 캔자스주립대 농과대학 박사 現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 現 바이오-의료커넥트센터 자문위원
우동진	1972년10월16일	2년	신규선임	사내이사	1999년 인하대학교 생명공학 석사 現 세니젠 사업전략이사

[별첨 2]

■ 감사선임의 건

성명	출생년월	임기	신규선임여부	주요경력(현직포함)
최영봉	1973년04월21일	2년	신규선임	1998년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석사 2003년~2015년 달로이트안진회계법인 근무 現 우인회계법인 대표이사

[별첨 3]

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

1. 부여대상자(명)		해당 회사의 이사·감사 또는 피용자 관계회사의 이사·감사 또는 피용자	세니젠 쏘 임직원
			-
2. 당해부여 주식 (주)		보통주식	173,056주(총발행주식의 5%)
		기타주식	-
3. 행사 조건	행사기간	시작일	2023년 08월 21일
		종료일	2026년 08월 20일
	행사가격 (원)	보통주식	4,200
		기타주식	-
4. 부여방법		신주교부, 자기주식교부, 차액보상	
5. 부여결의 기관		주주총회	
6. 부여일자		2020년 08월 21일	
7. 부여근거		당사 정관 제11조의 1항, 3항	
8.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(주)		보통주식	183,056
		기타주식	-
9. 이사회 결의일(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)			
- 사외이사참석여부		참석 (명)	-
		불참 (명)	1
- 감사(감사위원)참석여부		참석	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	개정 이유
<p>제2조(목적)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1. 식품환경위생제품 제조 및 판매업</p> <p>1. 식품첨가물 제조 및 판매업</p> <p>....</p> <p>1.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</p> <p>1. 각 호에 관련된 제품의 도·소매업</p> <p>1. 각 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</p>	<p>제2조【목적】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1. 좌동</p> <p>1. 좌동</p> <p>1. 좌동</p> <p>1. <u>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</u></p> <p>1. <u>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</u></p> <p>1. <u>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</u></p> <p>1. <u>종합무역업 및 무역중개업</u></p> <p>1. <u>렌탈임대업</u></p> <p>1. 좌동</p> <p>1. 좌동</p>	<p>사업목적 추가</p>
<p>제6조(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) 당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,000주로 한다.</p>	<p>제6조【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】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,000주로 한다.</p>	<p>문구정비</p>
<p>제8조(주권의 종류) 당 회사의 주권은 1주권, 5주권, 10주권, 50주권, 100주권, 500주권, 1,000주권 및 10,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.</p>	<p>제8조【주권의 종류】 당 회사의 주권은 1주권, 5주권, 10주권, 50주권, 100주권, 500주권, 1,000주권 및 10,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. <u>다만,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.</u></p>	<p>전자증권제도 도입 반영</p>
<p>(신설)</p>	<p>제8조의2【주식 등의 전자등록】 회사는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을 전자 등록하여야 한다.</p>	<p>전자증권제도 도입 반영</p>

<p><b>제9조의2(우선주식의 수와 내용)</b></p> <p>⑤ 우선주식의 의결권은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한다. 다만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<u>종류시까지</u>는 의결권이 있다.</p>	<p><b>제9조의2【우선주식의 수와 내용】</b></p> <p>5. 우선주식의 의결권은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한다. 다만,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<u>종료시까지</u>는 의결권이 있다.</p>	<p>오타수정</p>
<p><b>제11조의2(우리사주매수선택권)</b></p> <p>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<u>제13조의</u>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<b>제11조의2【우리사주매수선택권】</b></p> <p>6.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<u>제12조의</u>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오타수정</p>
<p><b>제14조(명의개서대리인)</b></p> <p>① 회사는 주식의 <u>명의개서대리인</u>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<u>사무취급 장소</u>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</p> <p>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,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, 주권의 발행, 신고의 접수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</p> <p>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<u>증권의 명의개서</u>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</p>	<p><b>제14조(명의개서대리인)</b></p> <p>1. 회사는 주식의 <u>명의개서대리인</u>을 둔다.</p> <p>2.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<u>영업소</u>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</p> <p>3.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,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, 주권의 발행, 신고의 접수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 <u>다만,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</u></p> <p>4.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<u>증권명의개서</u> 대행 업무규정에 따른다.</p>	<p>전자증권제도 도입 반영</p>

<p>제15조(주주 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)</p> <p>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,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 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15조【주주 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】</p> <p>1. 좌동</p> <p>2. 좌동</p> <p>3. 좌동</p> <p>4. 제1항에서 제3항은 <u>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</u></p>	<p>전자증권제도 도입 반영</p>
<p>(신설)</p>	<p>제15조의2【주식 등의 전자등록】</p> <p>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 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.</p>	<p>전자증권제도 도입 반영</p>
<p>제16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</p> <p>③ <u>이 회사는</u>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,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. <u>이 경우</u>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16조【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】</p> <p>3. <u>회사는</u>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,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, <u>회사는</u>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문구정비</p>
<p>제19조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</p> <p>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</p>	<p>제19조【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】</p> <p>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 <u>다만,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</u></p>	<p>전자증권제도 도입 반영</p>

	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.	
(신설)	제19조의2【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】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.	전자증권제도 도입 반영
제23조(소집지)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, 필요에 따라 인접지역 또는 지점에서 개최할 수 있다.	제23조【소집지】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,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또는 지점에서 개최할 수 있다.	문구정비
제27조(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)  이 회사,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,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.	제27조【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】  회사,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,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.	문구정비
제28조(의결권의 불통일행사)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	제28조【의결권의 불통일행사】 1.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	문구정비
제32조(이사의 수)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.	제32조【이사의 수】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내로 하고,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.	이사의 수 변경
제34조(이사의 임기)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그러나,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	제34조【이사의 임기】 1.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그러나,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	임기 변경

의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.	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.	
<b>제39조(이사회 결의방법)</b>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	<b>제39조【이사회 결의방법】</b> 2.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	문구정비
<b>제44조(감사의 수)</b>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.	<b>제44조【감사의 수】</b> 회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.	감사의 수 변경
<b>제47조(감사의 직무등)</b>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.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	<b>제47조【감사의 직무 등】</b> 4. 감사에 대해서는 제3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5. 좌동 6.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(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)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	문구정비
<b>제52조(외부감사인의 선임)</b>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위원회(또는 감사위원회)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,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	<b>제52조【외부감사인의 선임】</b>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(또는 감사위원회)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,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	법률명칭 및 변경 사항 등 반영
(신설)	<b>부 칙</b> <b>제1조【시행일】</b> 이 정관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, 제8조의2, 제14조 3항, 제15조, 제15조의2, 제19조, 제19조의2 개정 규정은 주식·사채	

	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 시행한다.	
--	--	--

## 주 주 총 회 참 석 장

일 시 : 2020년 8월 21일 (금) 11시

장 소 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16 평촌디지털엠피아 411호  
(본사 대회의실)

주식회사 세니젠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시어 감사합니다.

---

주식회사 세니젠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합니다.

소유주식수 :

주민(법인)등록번호 :

주 주 명 :

---

※ 대리인 위임장

대 리 인 명 :

주민등록번호 :

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위임합니다.

위 임 자 :

(인)

---

